

◎한국 IPG의 활동

- 한국 지식재산권법 개정 현황 01
- 2022년도 권의 사항 제출 04

◎IP를 알아

- 한국IP뉴스 05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삼성전자, 2022년 미국 특허 취득 건수 1위
- 한국 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 일본의 한국 특허 출원 동향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장마의 계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퀴즈를 맞춰봅시다!

한국특허청은 2023년 4월 ○○기술을 전담 심사하는 '○○심사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① 기계 ② 의약품 ③ 반도체

※ 정답은 본지 4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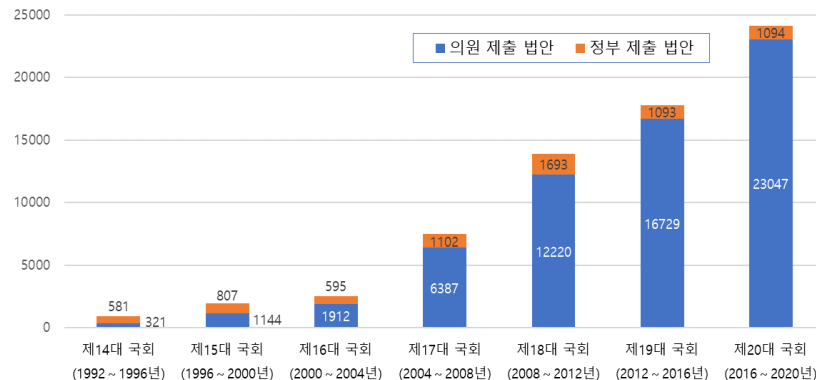
한국 지식재산권법 개정 현황

◎한국의 법 개정 형식

한국의 지식재산권법은 일본의 지식재산권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어 일본 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본회의 심의, 가결·성립을 거쳐 공포한 후 시행되는 전체적인 흐름 또한 한일 양국이 동일합니다.

한일 양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바로 일본은 정부입법이 대부분이고 의원입법이 예외적인 반면, 한국은 의원입법이 대부분이고 정부입법이 예외적이라는 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경쟁하듯 많은 법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일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법안이 매일같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안 발의 건수 추이



이에 따라 법 개정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 기준으로 2022년에는 특허법이 3회, 디자인보호법이 5회, 상표법이 4회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한국 지식재산권법의 최근 3개년도 개정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행된 법률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2019년 7월 9일 시행,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20년 10월 20일 시행)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년 7월 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2020년 10월 2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IPG의 활동

법원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강화 (특허법: 2020년 3월 11일 시행)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는 발명의 대상이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CD나 DVD와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일본의 특허법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생산능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확대 (특허법: 2020년 12월 10일 시행,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2021년 6월 23일 시행)

산업재산권자가 산업재산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 기존에는 산업재산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없었으나 본 개정에 의해 초과 부분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은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일본의 개정 특허법과 궤를 같이 하는 개정이기도 합니다.

4.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확대 (2021년 10월 21일 시행)

기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에는 물품성이 요구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의해 보호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화상'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된 도형·기호 등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한다)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1일 자로 시행된 일본의 의장법(디자인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본과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물품 이외의 장소에 투영된 화상(GUI)이 그 자체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개정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2021년 3월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개정법에는 일본 개정 의장법의 (1) '건축물',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2) 관련 디자인 제도 확대 및 (3) 디자인권 존속 기간의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한일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새롭게 보호 대상에 추가된 화상의 예



(출처: 한국 특허청 2021년 3월 25일 자 보도자료)

5.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 연장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일본에서는 2008년 법 개정(2009년 4월 1일 시행)으로 심판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기간에 여유를 두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허, 디자인, 상표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은 외국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도 30일입니다.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는 외국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친화적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특허, 디자인, 상표의 각 출원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6. (일본에서 말하는) '한정 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 및 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조치 마련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IoT, 빅데이터, AI 등 정보기술이 진보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19년 7월 1일 시행)을 통해 상품으로서 널리 제공되는 데이터 또는 컨소시엄 내에서 공유된 데이터 등 사업자 등이 거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한정제공 데이터'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취득, 사용, 공개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율하였습니다.

한국도 2022년 4월 10일 자로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가 추가됨으로써 일본과 동일한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7. 재심사제도 도입 (상표법: 2023년 2월 4일 시행)

심사관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 지정 상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8. 부분거절제도 도입 (상표법: 2023년 2월 4일 시행)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 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회 계류 법안

1.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스커버리 제도란 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양 당사자가 본심(trial) 전에 서로가 가진 증거 및 정보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강력한 정보 수집 수단이지만 실무적인 부담이 크고 소송비용의 고액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은 자국 지재소송제도의 매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진행하면서 독일식 '전문가증거조사'를 도입하고 기존의 자료 제출 명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0년 8월과 9월 및 2021년 2월에는 특허법 개정안이, 2020년 9월에는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2020년 10월 시행된 법 개정을 통해 사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또한 독일법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일 양국에서 거의 동일한 제도로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산업계에서 외국 기업이 제도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자 한국 특허청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함께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으나.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어 본고 집필 시점인 2023년 5월에도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변리사의 침해소송 공동대리제도 도입 (변리사법)

일본에서는 2002년 변리사법 개정(2003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송대리권의 부여를 희망하는 변리사에 대해 신뢰성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6일에 제출된 법안이 2022년 5월 12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 확대 (디자인보호법)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일본 의장법 개정을 통해 본 의장의 의장공보

발행 전까지(본 의장 출원일로부터 8개월 정도)였던 관련 의장의 출원가능기간이 기초의장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한국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이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였으나 2022년 12월 9일 제출된 개정 법안에 의해 3년 이내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장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법과 비교하면 여전히 짧은 기간입니다. 향후 개정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 본고 집필 이후인 2023년 5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 상표공존동의제도 도입 (상표법)

상표공존동의제도란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현재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3월 20일에 상표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추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한일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보형(상표의 선등록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관이 동의 행위를 참작하여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완전형(상표의 선등록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지 않는 제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5. 의약품 특허연장등록기간의 상한 설정

현행 한국 특허법에는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등(이하 "허가등")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상한 또는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일본 법과 동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아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허가 등에 의해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 받은 날부터 14년까지로 제한
- 1개 허가 등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제한

이는 미국, 중국과 동일한 제도로 개정됨을 의미하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됩니다.

2022년도 건의 사항 제출

한국 IPG는 서울재판클럽(SJC)이 매년 종합하여 한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 중 지식재산 분야 관련 내용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말, 지식재산 분야 관련 건의사항으로 12개 항목의 요청사항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식재산 분야 건의사항

건의사항	개요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보호범위 명확화 [계속]	2020년 3월 11일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방법 발명의 실시 행위로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가 추가됨. 이로 인해 확장된 실시 행위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함.
○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의 답변 기간 [계속]	국제 조화의 관점에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지정 기간의 장기화를 요청함.
○ 특허법 조약(PLT) 조기 가입 [계속]	한국은 특허법 조약(PLT)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 기간 내에 연장 신청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함. 또 한국에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출원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의 PLT 조기 가입을 요청함.
○ 간접침해규정 확충 [계속]	권리보호 강화의 관점에서 '전용품' 외에도 '전용품은 아니지만 특허상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악의'로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성립 범위의 확대를 요청함.
○ 관련 디자인제도의 확충 [계속]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도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최초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청함.
○ 통상실시권의 대항요건 [계속]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 계약의 존재에 의거하는 당연대항의 원칙으로 할 것을 요청함.
○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의 외국인 상시험기간의 가산, 보완기간 산입 및 심판단계의 연장기간 보정 절차 [계속]	신약허가절차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허가를 위해 착각한 임상시험은 해외에서 실시된 것이라든가 그 임상시험 기간을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산정에 가산해 줄 것을 요청함.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patent linkage)의 문제점(판매금지처분의 제외사유 삭제) [계속]	실시허락 등에 의한 비침해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타 동일한 의약품이 판매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기타 동일한 의약품에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청함.
○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위해성관리계획(RMP) 일원화에 따른 의약품데이터보호제도 도입 [신규]	데이터보호제도 수립을 위해 국내외 선발 의약품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데이터보호기간이 현재의 재심사기간보다 짧아지지 않을 것을 요청함.
○ 정정심판 등의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신규]	정정심판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취소신청에서 정정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요청함.
○ 특허발명실시 내 수출 추가 [신규 (2013-2019년도에도 요청)]	한국 특허법 제2조(정의)에서 발명의 실시의 정의에 '수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경에서 확산되는 침해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의 실시의 정의에 '수출'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 특허 취소 신청 시 특허 취소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 장기화 [계속]	최소한 특허권자가 재의자일 경우, 특허 취소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을 3개월로 해 줄 것을 요청함.



퀵즈 정답

정답은 ③반도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추진단의 신설도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추진단은 6과·팀, 167명 규모로 구성된 국(局)에 상당하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상황에 따라 향후 운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4일 자 지식재산 뉴스 게재)



※JETRO 한국 지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반도체 고속연 전문인력 30명, 특허심사관으로 공식 시작

| 한국특허청 (2023.2.2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채용」 최종 합격자 30명을 2월 23일(목) 발표했다.

이번 채용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합격자들은 임용 후 신규 심사관 교육 등을 거쳐 반도체 설계·공정·소재 등 세부 기술분야별 부서에 배치되어 특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심사역량 배양을 위해 2년여간의 밀착 지도(멘토-멘티)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에 반도체 분야 전문 특허심사관의 추가 채용을 추진 중이며, 추후 성과를 보아가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2차전지 등 타 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 한국특허청 (2023.3.2)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원장 김명섭)은 3월 1일(수)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1998년~2022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2022년 말)로 단축되어 40%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1998.3~2002.12)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2018.1~2022.12)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과 더불어,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앞으로 전자(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기반(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③ 특허청,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탐지기(레이더), '특허분쟁 위험 경보 시스템' 오픈

| 한국특허청 (2023.3.28)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ipalert.koipa.re.kr)을 3월 28일(화)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알려준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한편, 특허분쟁 위험특허나 기술분야별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 목록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④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

| 한국특허청 (2023.4.4)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상승효과(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왔고,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추진단 신설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le No.173

삼성전자, 2022년 미국 특허 취득 건수 1위



2023년 1월 6일,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IPO)가 2022년 미국 특허 취득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1. 속지주의와 외국 출원 전략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허는 국가별로 출원해 개별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심사 및 등록을 거치며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된 해당 국가 및 지역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및 등록된 경우, 특허권은 일본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 국가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번역료나 현지 대리인 비용에 유의하면서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와 취득 건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 2022년 미국 특허 취득 순위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IPO)는 매년 미국 특허 취득 건수 순위를 발표합니다. 2022년 순위는 2023년 1월 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특허 취득 순위]

순위	기업명	2022년 특허 취득건수	2021년 특허 취득건수(순위)
1	삼성전자	8,513	8,517 (2위)
2	IBM	4,743	8,540 (1위)
3	LG전자	4,580	4,388 (3위)
4	도요타자동차	3,056	2,753 (8위)
5	캐논	3,046	3,400 (4위)
6	TSMC	3,038	2,807 (7위)
7	HUAWEI	3,023	2,955 (5위)
8	BOE	2,725	2,141 (14위)
9	Raytheon Technologies	2,684	2,694 (9위)
10	QUALCOMM	2,656	2,165 (13위)

출처: IPO, 'Top 300 Organizations Granted U.S. Patents in 2022'

미국의 IBM이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약 29년 간 정상을 지켜왔지만 2022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특허 취득 건수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 그것도 한국 기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2022년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 취득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의 1위는 오히려 특허 취득 건수가 전년도 대비 44%로 크게 감소한 'IBM의 실책'에 의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BM은 2023년 1월 9일 자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순위 변동은 2020년에 특허 취득 건수로 시장을 주도하는 데 집착하지 않기로 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AI, 보안, 반도체 및 양자컴퓨팅 등 분야에서 강력하고 질 높은 진보를 위해 내부 인적 자원과 리소스를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특허는 양? 질?

특허는 하나만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핵심 기술부터 주변 기술까지 폭넓게 다수의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품질 특허(영향력이 낮은 특허)는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일 뿐이라 보유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허의 양과 질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할지 결론 내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직관적인 순위에 신경쓰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IPO 순위는 300위까지 기업명이 공개되어 있으니 자사 또는 경쟁사의 순위가 궁금하신 분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ipo.org/wp-content/uploads/2023/01/2023-Patent-300-and-IPO-Top-Patent-Owners-List-FINAL-1.pdf>

미국 특허 취득 건수 순위에서 최대 라이벌을 잃어 버린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서 어떤 전략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일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재

File No.174

한국 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2022년 9월 28일, 한국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특허출원 제10-2020-7007394 호에 대해 무효처분했습니다.

1. 사건 배경 및 쟁점

2019년 9월 17일,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이하, '출원인')는 국제 특허 출원을 하면서 출원서 발명자란에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라 기재했습니다(국제공개공보 WO2020/079499). 명세서의 '식품 용기 관련 발명'과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발명'이라는 기재에 대해 출원인은 '자신은 이들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가 2개의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이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무효처분

2020년 3월 12일자로 한국 특허청에 제출된 상기 국제특허출원의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 발명자란에 '다부스(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특허청은 2021년 5월 27일, 해당 출원(한국특허출원 제10-2020-7007394호)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한국 특허청은 2022년 9월 28일자로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특허 출원인은 인공지능도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7개국(한국, 미

국, 영국, 중국, 유럽, 호주, 캐나다)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명의 주체는 인간(자연인)으로 한정되므로 인공지능을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바, 인공지능 자체를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3. 외국 특허청 및 법원의 판단

미국, 유럽, 영국 특허청도 '특허출원의 발명자는 자연인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DABUS)을 발명자로 한 상기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국가의 법원도 해당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또 호주의 경우,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을 거절결정한 반면 1심 법원은 인공지능이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로는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발명자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DABUS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거절결정한 특허청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인공지능이 완성한 발명도 특허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원서에 발명자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이 발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향후 과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의 주체를 정하고 발명을 완성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인공지능을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인정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앞으로 인공지능 발명(AI-generated invention)을 둘러싼 쟁점(예를 들어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 귀속, 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정도,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호 해설자>

제일특허법인 이우람 변리사

2004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졸업, 2018년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졸업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부소장)

일본의 한국 특허 출원 동향



2022년 9월호에서 외국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한 일본이 2021년 처음으로 미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2위로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순위는 과연 어떨까요? 궁금하셨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 외국 특허 출원의 중요성

특허제도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출원 후 일정 기간(출원 후 1년 반)이 지나면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즉 권리자 보호와 기술 정보 활용의 조화를 꾀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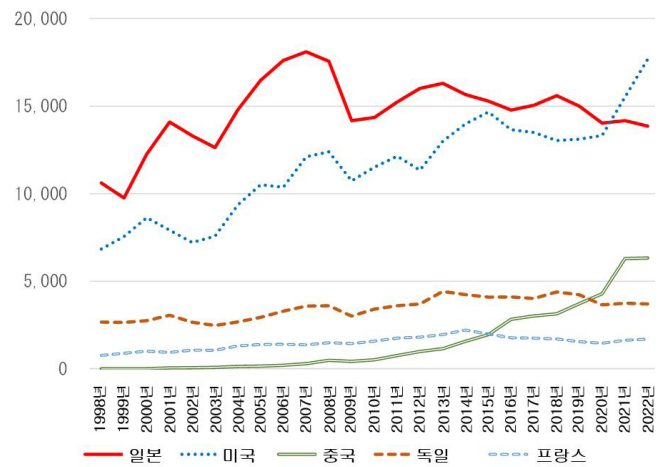
한편 특허는 국가별로 출원해 개별 국가의 심사 및 등록을 거치며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속주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및 등록된 경우, 특허권은 일본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 국가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만 출원하고 그 외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특허의 경우, 1년 반 뒤에 해당 내용이 전 세계에 (일본어로) 공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특허권의 효력은 일본 국내에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 기술 정보를 제공하게 될 뿐 외국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외 특허 출원 시에는 번역료나 현지 대리인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때문에 특허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중요 기술은 해외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2. 외국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 추이

[한국에 대한 특허 출원 상위 국가의 출원 건수 추이]



출처: 한국 지식재산 통계연보 (2001~2021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월보 (2022년) 기반 필자 작성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1998년 이후 외국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를 정리해보면, 2020년까지는 일본이 줄곧 선두를 유지해왔지만 지난 번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처음으로 미국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하락했습니다.

그 후 2022년, 미국의 한국 출원은 전년 대비 약 14.0% 증가한 17,679건을 기록해 더욱 늘어난 반면 일본의 한국 출원은 약 2.2% 감소한 13,860건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의 한국 출원은 2022년 큰 변동없이 6,320건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차이만 더 벌어져 일본의 1위 탈환이 요원해졌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중국의 특허 출원은 상당히 증가한 반면 그 외 국가의 출원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특허 순위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출원 동향 및 일본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재